









##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라.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4) 각 당사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민감 품목 : 모든 관세 품목의 10%

초민감 품목 : 모든 관세 품목의 3% or 200개의 관세 품목







## 양국은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

보도자료 ('21.2.4)









승용차 Hs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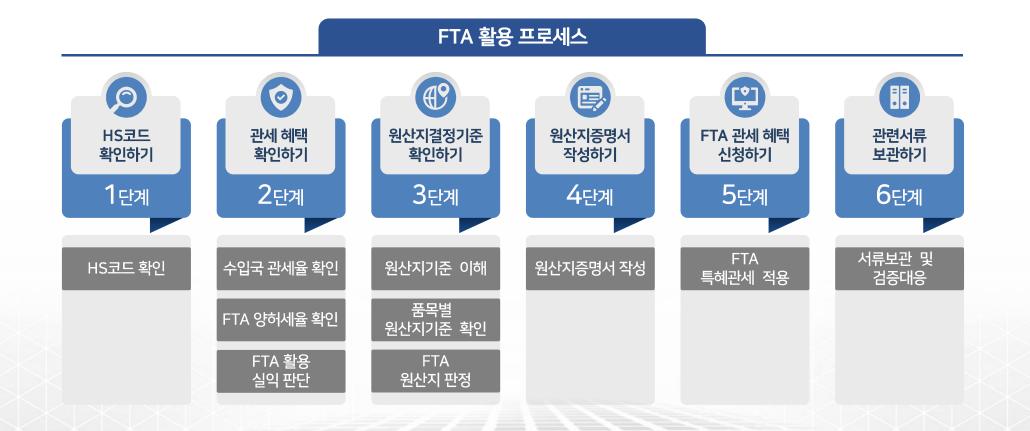
8703.23

AHTN 코드	풍옥영	기준 세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 차	10년차	11년차	12년 차	13년차	14년 차	15년 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 차	20년 차
8703.23.93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 인 것	35 %	35 %	31.5 %	31.5 %	28 %	28 %	24.5 %	24,5 %	21 %	21 %	17.5 %	17.5 %	14 %	14 5	10.5 %	10.5 %	7 %	7 %	3.5 %	3.5 %	0%



AHTN 코드	풍옥영	기준 세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 차	13년 차	14년 차	15년 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 차	20년차 이후
8429.52.00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15 %	15 %	13 %	13 %	13 %	11 %	11.5	9 %	9%	7%	7%	5 %	55	3 %	3%	0%	0 %	0%	05	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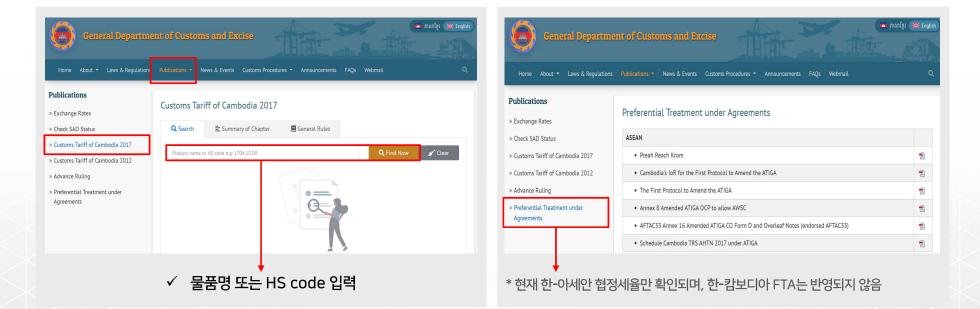




#### STEP 1 Hs code 확인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 URL : <u>https://customs.gov.kh/en</u>





#### STEP 2 관세율 확인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 예시 덤프차의 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하는 경우

				D	6)			
Head	Tariff code	Description of Goods	Unit		Imp.	Exp.	Т	
				CD	ST	VAT	ET	
87.04	8704.10	- Dumpers designed for-highway use	u					
87.04	8704.10.13	g.v.w. not exceeding 5 t	u	15	30	10	0	
87.04	8704.10.14	g.v.w. exceeding 5 t but not exceeding 10 t	u	15	30	10	0	
87.04	8704.10.15	g.v.w. exceeding 10 t but not exceeding 20 t	u	15	30	10	0	<b></b> ]
87.04	8704.10.16	g.v.w. exceeding 20 t but not exceeding 24 t	u	15	30	10	0	
87.04	8704.10.17	g.v.w. exceeding 24 t but not exceeding 45 t	u	15	30	10	0	
87.04	8704.10.18	g.v.w. exceeding 45 t	u	15	30	10	0	
87.04	8704.10.31	g.v.w. not exceeding 5 t	u	15	30	10	0	
87.04	8704.10.32	g.v.w. exceeding 5 t but not exceeding 10 t	u	15	30	10	0	
87.04	8704.10.33	g.v.w. exceeding 10 t but not exceeding 20 t	u	15	30	10	0	

#### ✓ 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관세(CD), 부가세(VAT) 확인 가능

\* HS CODE는 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 함

\*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 STEP 2 관세율 확인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 예시 승용차의 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하는 경우

			Unit	D	5)			
Head	Tariff code	Description of Goods			lmp.	Exp.	Т	
				CD	ST	VAT	ET	
87.03	8704.23	<ul> <li>-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3,000 cc :</li> </ul>						
87.03	8703.23.21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1,800 cc	u	15	50	10	0	
87.03	8703.23.22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800 cc but not exceeding 2,000 cc	u	15	50	10	0	
87.03	8703.23.2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000 cc but not exceeding 2,500 cc	u	15	50	10	0	
87.03	8703.23.24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0 cc	u	15	50	10	0	
87.03	8703.23.31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1,800 cc	u	15	50	10	0	

#### ✓ 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관세(CD), 부가세(VAT) 확인 가능

\* HS CODE는 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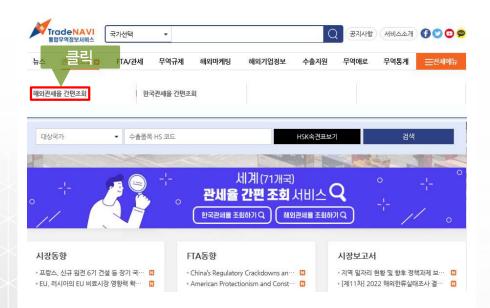
\*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 STEP 3 FTA 양허 세율 확인

## FTA 관세 양허 세율 확인 방법

-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FTA별 양허세율 확인
- URL : http://www.tradenavi.or.kr





• 대상국	▶대상국 캄보디아 🔳 ▼ HS코드 8704.10.13		13 · 품명(Description)	· 품명(Description)					
ġ	국문			기본세율	AKFTA	RCEP	특별세	부가세	E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HS Code	품명(Description)	(2순위)	(1순위)	(1순위)	(내국세)	(내국세)	보기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8704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870410	- Dumpers designed for off-highway use :						
[8704]	화물자동차	070410	Completely Knocked Down :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8706]	제8701호의 것	87041013	g.v.w. not exceeding 5 t	15%	미양허	15 %	40%	10%	+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	87041014	g.v.w. exceeding 5 t but not exceeding 10 t	15%	미양허	15 %	40%	10%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87041015	g.v.w. exceeding 10 t but not exceeding 20 t	15%	미양허	15 %	40%	10%	+
[00500]	공장 · 창고 · 부두 · 공항에서 화물	87041016	g.v.w. exceeding 20 t but not exceeding 24 t	15%	미양허	15 %	40%	10%	+
[8709]	익	87041017	g.v.w. exceeding 24 t but not exceeding 45 t	15%	미양허	15 %	40%	10%	+

— 10 —

해외관세율 간편조회



## STEP 3 대 캄보디아 수출 FTA 활용 예시 (한->캄)

		관세	한-아세안 FTA	RCEP
	2022 년	15%	15%	15%
굴착기 Hs code 8429.52.00	2023 년		15%	13%
	2024 년 2025 년		12%	13%
	2026 년		12%	11%

- 11 -



### STEP 3 거대 캄보디아 수출 FTA 활용 예시 (한->캄)

		관세	한-아세안 FTA	RCEP
	2022 년	35%	35%	35%
납축전지 Hs code	2023 년		35%	<mark>31.5%</mark>
8507.10.92	2024 년		28%	31.5%
	2025 년 2026 년		28%	28%
	2027 년		28%	24.5%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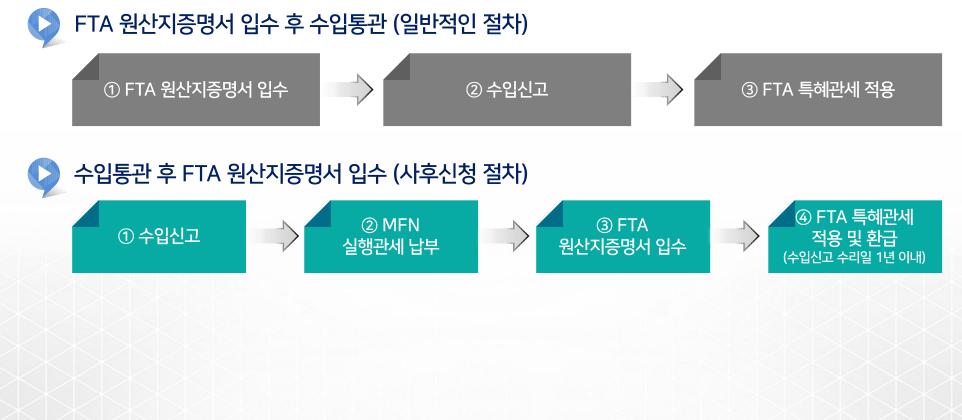


### STEP 3 거대 캄보디아 수출 FTA 활용 예시 (한->캄)

		관세	한-아세안 FTA	RCEP
	2022 년	35%	15%	<b>15%</b>
증류주, 리큐르 Hs code	2023 년		15%	<b>13.5%</b>
2208.90.30	2024 년		12%	13.5%
	2025 년 2026 년		12%	12%
	2027 년		12%	10.5%
		— 12 —		



#### STEP 5 FTA 관세 혜택 신청 절차



— 13 —



#### STEP 6 관련서류 보관

- \* FTA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 RCEP협정문 3장 제27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 \*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 ▶ 수입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 생산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시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 • 수출자 보관서류

- 생산자 보관서류 외
-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자료: FTA 특례법 시행령 10조







<u>산업통상자원부 한-캄 FTA 보도자료(</u>'21.2.4)



- <u>RCEP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u>
- 4
  - <u> 캄보디아 관세청 Hs code 및 관세율 검색 링크</u>

15 —



<u>트레이드네비 FTA별 양허세율 검색 링크</u>



RCEP 활용 가이드(유튜브 영상) 링크



RCEP 실무활용 가이드(문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주제1. 중고 제품도 FTA 적용 가능?

## 화물자동차 : 대 캄보디아 수출 3위 품목

- 무역협회 통계 (2021년) MTI 4단계 분류

#### 🔟 매일경제

단종 국산차, 잘 팔리는 나라 2위는 캄보디아...1위는? 중고차 수출에는 해당 국가의 연식 제한과 수입 관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출 1위인 리비아와 2위인 캄보디아의 경우 연식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는... Feb 10, 2020



리비아는 2013년 이후 6년 연속 한국의

중고차 수출 국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캄보디아(2만4761대)였다. 가나

(2만2128대)와 도미니카공화국(1만8998대)이 뒤를 이었다.

2019년 2월 한경닷컴



## 주제2. 인증 수출자인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 직접 발행?

##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주제3. 누적원산지

##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주제4. 사후신청절차

